

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
③ 주 소		(전화번호:)	

출자(투자) 금액 명세								
④ 출자일 (투자일)	⑤ 투자 구분 (벤처 등, 조합1·2)	⑥ 벤처 등 또는 조합1·2의 명칭 (위탁회사· 벤처기업명· 투자신탁명)	⑦ 벤처 등 또는 조합1·2의 사업자 등록번호	⑧ 금융기관 · 계좌번호	⑨ 출자금액 (투자금액)	⑩ 공제대상금액 [(⑨)×10(30,50, 70,100)%]	⑪ 한도액 (총합소득금액 ×50%)	⑫ 공제 금액 (⑩·⑪ 중 적은 금액)
· · ·								
· · ·								
· · ·								
계								

신청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6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첨부서류	출자 또는 투자확인서(별지 제5호서식 부표)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"⑤ 투자 구분"란: 벤처 등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3호·제4호·제6호), 조합1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1호·제5호) 또는 조합2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2호)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2. "⑦ 벤처 등 또는 조합1·2의 사업자등록번호"란: 투자 대상 "벤처 등", "조합1" 또는 "조합2"의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3. "⑨ 출자금액(투자금액)"란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적습니다.

가. 벤처투자조합, 민간재난접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: 출자액. 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1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× $\frac{\text{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}}{\text{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}}$

나.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: 투자액. 다만, 투자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적습니다.

다.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 × $\frac{\text{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}}{\text{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}}$

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투자액

라.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: 투자액

마. 창업·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: 투자액

바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: 투자액

4. "⑩ 공제대상금액"란: 2018.1.1. 이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3호·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%,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%,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% (2015.1.1.~2017.12.31. 기간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%,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%,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%)를 적용하고,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%를 적용합니다.

5. "⑪ 한도액"란: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/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210mm× 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출자 또는 투자확인서

출자자 (투자자)	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
	③ 주 소 (☎ :)			
제출처	☐ 원 천 징 수 의 무 자 ☐ 납 세 자 조 합	④ 법인명(상호)		
		⑤ 대표자(성명)		⑥ 사업자등록번호
		⑦ 소재지(주소)		
	☐ 세무서장	⑧ 주소지관할서		세무서장
투자조합관리자등		⑨ 법인명(상호) (☎ :)		

출자(투자)금액명세								
출자(투자)내역					벤처기업투자내역			
⑩ 출자일 (투자일)	투자조합(위탁회사) 또는 투자신탁				⑮ 출자금액 (투자금액)	⑯ 투자일	⑰ 투자기업명	⑱ 투자금액
	⑪ 투자 구분	⑫ 조합명 (위탁회사명) 또는 투자신탁명	⑬ 계좌 번호	⑭ 출자 총액				
· · · ·						· · · ·		
· · · ·						· · · ·		
· · · ·						· · · ·		
계						계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(투자)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확인자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

출자자 (투자자)	① 성명		② 생년월일	
	③ 주소 ()			
제출처	[] 원천징수의무자 [] 납세자 조합	④ 법인명(상호)		
		⑤ 대표자(성명)		⑥ 사업자등록번호
		⑦ 소재지(주소)		
	[] 세무서장	⑧ 주소지관할서		세무서장
투자조합관리자등		⑨ 법인명(상호) ()		

출자(투자)금액명세

출자(투자)내역						벤처기업투자내역		
⑩ 출자일 (투자일)	투자조합(위탁회사) 또는 투자신탁				⑮ 출자금액 (투자금액)	⑯ 투자일	⑰ 투자기업명	⑱ 투자금액
	⑪ 투자 구분	⑫ 조합명 (위탁회사명) 또는 투자신탁명	⑬ 계좌 번호	⑭ 출자 총액				
· · ·						· · ·		
· · ·						· · ·		
계						계		

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

⑲ 출자(투자) 과세연도	⑳ 출자금액 (투자금액)	㉑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확인자 (서명 또는 인)

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

작성방법

1. "① 성명"란부터 "⑱ 투자금액"란까지: 별지 제5호서식 부표(1)의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.

2. "⑲ 출자(투자) 과세연도"란: ⑩란 및 ⑯란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.

3. "㉑ 출자금액(투자금액)"란: 출자(투자) 과세연도에 출자(투자)한 금액 연간합계액을 적습니다.

4. "㉒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"란: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